

地方財政投 ・ 融資審査制度 發展方案

이규환 /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I. 머리말

주민직선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억제되어 왔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폭넓게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長과 의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의욕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선거시 제시한 對국민 公約을 실천하려는 가운데 지방재정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팽창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전시행정의 폐단을 일찍이 우려한 정부는 지난 1994년 12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지방재정 건전성의 저하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여건이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을 기하며,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또는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제도의 법제화가 그것

이다.

총전의 내무부령에 의해 199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영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방만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를 제도화시키는데 명문화하였던 것이다. 특히 지방재정운영부실단체에 대한 재정진단제도와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그동안 내무부령으로 운영해 오던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제도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이를 법제화한 것은 큰 의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 있어서는 이런 지방재정운영진단제도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를 중앙정부가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오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예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실제 지난 8~9년간 시행해 오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경험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이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2001년 개정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중심으로 투·융자심사제도 운영방향과 금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를 강화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II. 地方財政投・融資審査制度의 必要性

1. 投・融資審査制度의 意義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적합하게 선정되고 투자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심사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제도를 19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 개정시 신설하였다. 또한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내무부령 제570호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군·구의 경우 5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시·도의 경우 2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은 당해 자치단체 투자심사위원회의 자체 심사를 실시하고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이러한 투·융자사업심사제도는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투자사업 중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와 관련이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국가 계획과의 연계한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여부 및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치단체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실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로 정착화시킨 것이다.

2. 投·融資審査制度的 必要性

제헌헌법에 의하여 도입되어 1952년에 비로소 실시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61년 5·16 이후 중단되어 오다가 지난 1991년 30년만에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의 장을 민선으로 선출하면서 명실공히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려놓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두 번에 걸쳐 실시한 주민직선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선거 공약을 남발하는 까닭으로 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후보자들이 임기중에 도저히 완수할 수 없을 정도의 공약을 실현에 옮기고자 과욕을 나타내는 가운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난을 맞을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면도 없지 않다.

최근 미국의 많은 자치단체 중에는 너무 의욕적인 지역개발사업·복지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는 인기 위주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감당

못할 부채로 원리금의 상환규모가 전체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금융비용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게 되어 자체재원으로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파산 선고」를 당하여 자치단체로서 법적 전환과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남발하고, 민선 자치단체의 장이 무리하게 공약을 실현에 옮기려 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팽창할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재정수입에 대한 고려없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할 경우 외국에서와 같은 파산선고제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통제장치의 하나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보다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융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 하겠다.

3. 投・融資審査制度의 特徵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사

업의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제도는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장치 중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하겠다.

첫째, 사전적 통제장치라는 점이다. 지방재정난을 예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장치 중에는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 장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적절한 재정지도와 대책을 세우는 지방재정운용 진단제도가 사후적 통제장치인데 대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사전적 통제장치에 속한다고 하겠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경우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비권력적 통제장치이다. 지방재정난을 예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장치 중에는 권력적 통제장치와 비권력적 통제장치가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

하여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하는 기재승인제도 등은 권력적 통제장치인데 대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비권력적 통제장치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고자 하는 투자사업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와 관련이 있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연계한 재원조달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중앙부처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치단체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실시하고, 예산편성이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데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비권력적 통제장치인 것이다.

Ⅲ. 地方財政 投·融資審査 制度의 運營實態

1. 投·融資審査制度의 運營現況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예산편성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투·융자사업심사는 기본적으로 7개 기준에 의해 심사되며, 구체적으로 ①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②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③ 소요자금조달 및 원리금상환능력, ④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⑥ 국민숙원·수해도 및 사업요구도, ⑦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이다. 이러한 7개 기준에 의한 기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수행준비 및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투·융자심사의 대상사업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자체심사와 의뢰심사로 구분된다. 자체심사는 광역시·도 20억원 이상(서울은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며, 시·군·구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사업이다. 그리고 의뢰심사의 경우 시·도 심사의 대상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이며,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이 중에서 법령 또는 국가관련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여기에는 재해복구 등 원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경지정리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광역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심의사업 등 18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중앙투·융자심사분석결과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사대상사업수와 규모가 급격히 줄었고 1999년의 경우 총 97개 대상사업 중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적정하다고 판정된 사업은 전체의 71%인 61개 사업으로 조사되었다.(<표 1> 참조)

2. 投・融資審査制度運營上 問題點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융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시행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및 지방재정분야의 전문가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개선의견을 종합하여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전문개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지난 1999년 4월 16일 공포·시행하였다. 이때 개선·보완된 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그동안 경제규모변동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확대조정하였다. 즉

<표 1> 중앙투·융자심사분석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총대상사업수	122(98,825)	344(188,654)	205(180,856)	126(66,317)	97(94,668)
적정사업수	62(64,447)	218(122,681)	75(27,712)	82(44,727)	61(67,352)
부적정사업수	60(34,378)	126(65,973)	130(153,144)	44(21,590)	36(27,316)

출처 :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2000)

시·군·자치구의 경우 종전의 20억 미만의 신규사업을 자체 심사하던 것을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종전의 100억원(광역시는 2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을 자체심사하던 것은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확대·조정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그동안 중앙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서울특별시도 이제는 중앙심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투자심사의 주기를 상·하반기 정기심사제로 투자심사주기를 명문화하였다. 종전에는 상반기에 대한 정기심사 시기만 규정되어 있고 수시로 실시하는 하반기 심사의 심사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순기에 맞추지 못해 예산에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상반기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심사시기를 명문화하였다.

셋째,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시기를 명문화하였다. 즉 당시 규칙개정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

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2월말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넷째, 투자심사 이행시기를 명문화하였다. 종전에는 투자심사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투자심사미이행사유로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또는 기본설계용역비를 삭감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99년 규칙개정으로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전에 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다섯째, 투자심사대상사업비에 대한 총사업비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 즉 투자심사대상사업비에 설계비·부대적 경비도 포함함을 명문화하였다.

여섯째,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시기를 명문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심사결과 보고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일곱째, 사업의 추진시기·규모·재원확보대책 등이 매우 부적절한 사업은 투자심사전에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덟째,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즉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이거나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투자심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난 1999년 4월 16일 지방재정부·용자사업심사규칙 개정으로 개선·보완된 내용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용자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지방재정부·용자심사결과물의 이행력·구속력이 미약함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심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심사없이 예산편성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투자심사결과와 재정지원과의 연계성이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다. 즉 투자심사결과 적정성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지원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지방채 발행 승인시에도 크게 참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도비 지원 등과도 연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투자심사기법 및 전문성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즉 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심사기법이 없어 주관적·편협적인 심사사례

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00년 투·용자심사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재정여건·타당성을 도외시한 사업계획수립으로 정상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허다함을 지적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추진한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9,948개(총사업비 15조) 가운데 1,568개(15.8%)가 재원부족·타당성 결여 등으로 발표만 하고 착수하지 못하거나, 착수후 중단한 상태임이 밝혀지고 있다. 추진중 중단사업 422개는 설계비 지출 등으로 8,592억원이 투입되어 예산사장 및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1995년 이후 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9개 사업(8조 3,079억원)에 대하여 투·용자심사결과 「유보」 또는 「재검토」 판정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심사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地方財政投・融資審査制度의 強化方案

1. 2001年 投・融資審査制度 運營方向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과

잉투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투·융자심사제도를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운영하고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관리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2001년 투융자심사제도 운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투·융자심사결과의 이행력 강화이다. 10억원 이상 모든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융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중기재정계획수립에 반영된 사업을 재정투·융자심사대상으로 하고, 투자심사를 통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세, 지방양여금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지방채 발행 승인시에도 반영하며, 시·도비 지원도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의 이행력·구속력을 강화토록 한다. 심사없이 예산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사후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로 정착토록 한다.

둘째,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투자심사기법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함으로써 투·융자심사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또한 사전 실무심사 및 현장심사강화로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셋째,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운영을 기하도록 한다. 투자심사결과를 예산편성의 근간으로 운영하며 심사없이 예산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국가계획과 연계운영으로 재정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즉 자치단체의 장이 계획하고 있는 신규 투자사업이 각종 국가장기계획과 경제·사회정책과의 복합성이 높은 경우 투자심사결과와 재정지원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킨다.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지방채발행 승인, 시·도비지원 등에 우선적 지원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다.

넷째, 사후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투자심사결과의 예산반영율, 사업추진상황 등을 사후평가하여 투자심사 결과의 객관성을 검증토록 한다. 따라서 사후평가결과를 지방재정운영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재원부족·타당성 결여 등으로 발표만 하고 착수하지 못하거나 착수후 중단한 상태, 투·융자심사결과 유보 또는 재검토 판정을 받고도 사업추진을 하거나 심사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가하도록 한

다.

2. 投・融資審査制度 強化方案

1) 投資審査結果의 履行力 確保

행정자치부는 2001년 3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 130호) 개정을 통하여 투·융자심사제도를 강화하였는 바 그 중에서 투자심사 결과의 이행력확보를 위한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편성결과에 대한 『재정페널티』부여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1회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투자심사 결과 예산반영율, 사업추진상황을 종합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심사결과에 반영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재정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금년중 지방재정법령과 교부세법령을 개정할 계획에 있다.

둘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다. 투자심사결과에 반영없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시·도비 지원 및 지방채발행승인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으며, 투

자심사결과를 심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관계부처 등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각종 재정계획과의 연계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투자심사제도를 각종 재정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등과의 연계·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2) 審査의 客觀性・專門性 確保

개정된 규칙을 통해 투·융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사평가 『메뉴얼』을 개발하여 각 자치단체에 보급하고자 계획중에 있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심사결과를 가능한 계량화할 수 있도록 금년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투·융자심사위원을 민간전문가로 대폭적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학계전문가, 민간단체, 관계공무원을 현행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며, 시·도 및 일반시는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2/3이상, 군(郡)은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도로·교통, 문화·체육·청소년, 청소·환경·상하수도, 주택·농수산, 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고르게 선정하도록 투·융자심사지침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전실무심사제도의 도입이다. 이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사전실무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예산편성후 심사의뢰하는 시점이나, 심사결과 종합평점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반려조치하도록 투·융자심사지침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3) 審査의 擴大・強化

투·융자심사의 확대·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심사범위는 축소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심사범위는 확대하는 것이다. 즉, 시·군·자치구 심사대상사업범위를 종전의 경우 총사업비 50억원 미만 사업과 전역 시·군·구비 사업이던 것이 개선방안에서는 총사업비 30억원 미만 사업과 전액 시·군·구비 사업으로 축소하였다.

한편 시·도 심사대상사업범위는 종전의 경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시·군·구 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서울시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시·도사업과 전액 시·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선방안에서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시·군·구 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서울시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시·도 사업, 전액 시·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규칙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둘째, 행사성 사업에 대한 중앙심사 실시이다. 시설물, 구조물 등을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구축하거나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포함하는 1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투·융자심사규칙개정안에 공연·축제·문화행사 등 9개 종류의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재심사의 강화이다. 종전에는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경우 재심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투·융자심사규칙개정안·지침에는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도 재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① 시·군·구에서 심사한 사업

으로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② 시·도에서 심사한 사업으로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③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한 사업으로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을 제심사의 대상으로 개정되었다.

넷째, 심사대상사업의 확대이다. 민간 자본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으로 심사하며, 기금·출연금·출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으로 심사하며, 산하단체, 공기업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으로 심사하도록 투·융자심사지침에 반영하였다.

다섯째, 현지심사제도의 강화이다. 사업시행으로 주민피해 발생우려지역, 다른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은 반드시 현장심사를 병행토록 투·융자심사지침에 반영하였다.

4) 審査時期의 調整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시기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첫째, 수시심사제도의 도입이다.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심사만 실시하던 것을 대상사업의 수요에 따라 『수시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둘째, 투자심사실시 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종전에는 실시설계 이전에 투자심사실시하던 것이 투·융자심사규칙 개정안에는 기본계획수립 이후 실시설계 이전에 실시하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재원구분별 사업시기를 조정하였다. 즉, 국고보조사업은 가급적 상반기 중 심사를 실시하고, 국고보조외의 사업은 하반기 중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투·융자심사지침에 반영하고 있다.

V. 맺는 말

정부는 지난 1992년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융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시행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 후 1994년 지방재정법 개정시 지방재정운용진단체도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를 법제화하였던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의 규모와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그 합리적 운영이 지방재정의 절실한 과제이므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로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재정통제장치인 것이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시·도심사 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사업의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 투자심사를 통하여 신규사업이 국가계획과의 연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 및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제도가 법규상으로 도입된 1992년 이후 7년 가까이 운영해 오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로 지난 1999년 4월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많은 보완·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이행력·구속력 미약과 투자심사결과와 재정지원과의 연계성 미흡, 투자심사기법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그동안 투·융자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어 2001년 3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개정령안(행정자치부령

제130호)에서 개선·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01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보면 첫째, 예산편성결과에 대한 「재정패널티」 부여,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각종 재정계획과의 연계의무화를 통하여 투자심사결과 이행력을 확보하였다.

둘째, 심사평가 「메뉴얼」을 개발·보급, 투·융자심사위원을 민간전문가로 대폭 보강, 사전실무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심사범위를 축소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심사범위 확대, 행사성 사업에 대한 중앙심사실시, 재심사의 강화, 심사대상사업의 확대, 현지심사제도 강화 등을 통하여 투자심사의 확대·강화를 도모하였다.

넷째, 수시심사제도 도입, 투자심사실시 시점 명확화, 재원구분별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투자심사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융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하나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제도는 이번에 개정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으로 앞으로 그 활용

가치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이규환, 『韓國地方財政論』, (서울: 법문사, 1999)

_____, “투자심사개론”, 『투자심사분석과정』,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2001년도 선택전문교육과정, 2001)

_____,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투·

융자심사제도”, 『지방재정』 18권 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_____, “지방재정운용진단의 필요성과 기능”, 『지방재정』 14권 3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5)

이 효,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발전과제 연구』,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제도 연찬회, 2000. 12)

행정자치부, 『시도투자심사담당과장회의 회의자료』, (2001. 3. 26).

시시용어 해설

• 보디 톱(Body Top)

데스크톱·랩톱·노트북·팜톱에 이은 미래형 컴퓨터. 일본전기(NEC)의 기술진이 개발한 보디톱(입는 컴퓨터)은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가 초소형화되는 시대를 예상, 어깨·허리·손목 등에 컴퓨터를 장착하고 이동중에도 각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편집실 -